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1. . . (제 회)	

석재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1.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석재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석재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7018호, 2021.2.19.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목적(안 제1조)

- 석재산업 진흥에 관련 법률 시행령의 목적

나. 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2조)

-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자체장의 의견 수렴, 필요한 자료의 제출 요청 등

다.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3조)

- 시행계획 수립 시기,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평가 등 시행계획에 포함될 내용, 필요한 자료의 제출 요청 등

라. 실태조사내용 및 방법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4조)

- 석재산업 현황 및 업종별 분포현황 등 조사내용 및 방법

마.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5조)

- 인력, 시설 등 지정기준 및 지정신청, 지정서의 발급 등
- 바.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취소 등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6조)
- 위반행위와 위반횟수에 따른 시정명령 및 지정취소 기준 등
- 사.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교육훈련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7조)
- 교육훈련 계획의 제출, 교육훈련 실적 보고 등
- 아.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교육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8조)
- 교육자료 및 교육프로그램의 개발·보급에 필요한 경비 지원 가능한 항목
- 자. 석재산업 기술개발 경비 지원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9조)
- 석재의 채취 및 가공에 관한 기술 등 연구·개발 및 산업화에 필요한 비용 지원 대상 기술 및 공모에 의한 지원대상 선정 등
- 차. 석재채취업등의 등록기준 및 절차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10조)
- 석재의 채취 또는 가공을 업으로 등록하기 위한 요건(자본금, 시설·장비, 기술인력 등), 등록증의 발급, 등록대장 작성·관리 등
- 카. 석재채취업자등의 등록 사항 변경 등의 신고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11조)
- 석재채취업자등의 명칭 및 대표자 등 신고하여야 하는 변경 사항 등
- 타. 석재채취업자등의 등록취소 등의 세부기준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12조)

- 위반행위와 위반횟수에 따른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기준

파. 석재산업의 전시·홍보 지원대상 등 관한 규정 신설(안 제13조)

- 전통 석재제품 등의 전시시설 설치 등 지원 항목, 지원 신청, 지원 대상 선정기준 및 선정위원회 구성·운영 등

하. 석재산업의 지원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14조)

- 석재산업 지원 신청, 현지조사 및 의견청취, 석재산업 종합정보시스템구축·운영 등

거. 전통 석재제품 인증 등의 기준(안 제15조)

- 전통성 등 전통 석재제품 인증 및 전통 석재제품 명인 인정을 위한 평가항목의 요건 등

너. 전통 석재제품 인증 등의 유효기간 연장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16조)

- 유효기간 연장신청 절차 및 방법의 안내, 연장신청 및 연장기준

더. 석재산업진흥지구의 지정 요건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17조)

- 석재채취업자등의 수가 10개소 이상인 지역 등 지정 요건

러. 석재산업진흥지구의 지정 절차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18조)

- 지정 필요성 등 타당성 조사의 시행, 지자체의 육성계획 수립 및 지정 신청, 석재산업진흥지구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머. 석재산업진흥지구에 대한 관리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19조)

- 육성계획 집행실적 제출 및 점검, 지정취소 등 조치에 필요한 절차, 조치결과 통보 등

버. 석재사업자협회의 정관 기재사항 등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20조)

- 목적,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등 정관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서. 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21조)

- 실태조사 등 한국임업진흥원에 위탁할 업무

어.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22조)

- 위반행위와 위반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

저. 시행령의 시행일(부칙 제1조)

- 2021년 2월 19일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산업통상자원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입법예고(2020. 7. 3. ~ 8. 13., 2021. 1. 13. ~ 1. 26.)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제1조(목적) 이 영은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종합계획의 수립·시행) ① 산림청장은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산림청장은 종합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산림청장은 종합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에게 그 내용을 알리고,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해야 한다.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산림청장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종합계획의 추진을 위해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수립해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평가
2. 해당 연도의 사업추진 방향
3. 주요 사업별 추진계획
4. 그 밖에 종합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산림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산림청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제4조(실태조사의 내용 및 방법)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석재산업과 관련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석재산업 현황 및 업종별 분포현황
2. 석재제품의 생산현황 및 가격동향
3. 전통 석재제품의 제조·가공 및 이용 현황
4. 석재산업 관련 기술보급 및 연구·개발 현황
5. 석재산업 관련 인력수요 및 고용 동향
6. 국내외 석재산업 동향 및 전망
7. 석재산업에 따른 환경피해와 복구 현황 및 재해 예방 실태
8. 그 밖에 석재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

② 실태조사는 현지조사, 문헌조사 또는 전화와 전자우편 등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5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기준 및 절차 등) ①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전문인력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지정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석재산업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교육과정과 교육내용에 관한 계획이 적절하게 수립되어 있을 것
2. 전문 교수요원 및 전담 운영인력을 각각 1명 이상 확보할 것
3.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교육시설 등 석재산업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교육 시설·장비를 확보할 것
4. 운영경비 조달 계획이 타당할 것

②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전문인력양성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산림청장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전문인력양성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지정 내용을 산림청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인력양성기관의 지정기준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6조(전문인력양성기관의 지정취소 등) ① 산림청장은 전문인력양성기

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교육훈련을 하지 않은 경우
2. 교육과정을 제7조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계획과 다르게 운영한 경우
3.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전문인력양성기관은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시정명령에 대한 이행계획서를 제출하고, 그 명령을 이행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시정조치 결과를 산림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산림청장은 전문인력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교육훈련을 하지 않은 경우
3. 교육과정을 제7조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계획과 다르게 운영한 경우
4.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5.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사람을 이수한 것으로 처리한 경우
6. 시정명령에 대한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정해진 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전문인력양성기관의 시정명령 및 지정취소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⑤ 산림청장은 제3항에 따라 전문인력양성기관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산림청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전문인력양성기관의 교육훈련) ① 전문인력양성기관은 석재산업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다음 연도의 교육훈련에 관한 계획(이하 “교육훈련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매년 11월 30일까지 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전문인력양성기관은 매 반기의 교육훈련 실적을 그 반기가 끝난 후 15일 이내에 산림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인력양성기관의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8조(교육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전문인력양성기관에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자료 및 교육프로그램의 개발·보급에 필요한 비용
2. 현장실습 등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경비
3. 강사료와 수당
4. 교육장비 및 교육시설 마련·관리 경비
5. 교육훈련에 필요한 조사 및 연구 비용
6. 그 밖에 교육훈련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항목

제9조(기술개발 경비 지원) ①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석재산업 관련 연구·개발 및 산업화 대상 기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석재의 채취 및 가공에 관한 기술
2. 석재제품의 품질 향상에 관한 기술
3. 석재산업으로 인한 환경피해 저감 및 복구에 관한 기술
4. 석재산업으로 인한 재해예방 등 안전강화에 관한 기술
5. 석재제품 생산 부산물·폐기물 재활용에 관한 기술
6. 전통 석공예 기법에 관한 기술
7. 그 밖에 석재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술

② 산림청장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석재산업 관련 기술을 연구·개발하거나 산업화하는 자에게 경비를 지원하려는 경우에는 그 지원대상이 되는 자를 공모하고, 그 지원 대상자 선정에 필요한 경우에는 석재산업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거나 전문기관에 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0조(석재채취업 등의 등록기준 및 절차) ① 법 제9조제1항 본문 및 제2항에 따른 석재의 채취 또는 가공을 업(이하 “석재채취업등”이라 한다)으로 등록하기 위한 요건은 별표 2와 같다.

② 법 제9조제1항 본문 및 제2항에 따라 석재채취업등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신청서에 제1항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주된 사무소의 소재

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이 별표 2의 등록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법 제9조제1항 본문 및 제2항에 따라 석재채취업등의 등록을 한 자(이하 “석재채취업자등”이라 한다)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증을 발급하고 석재채취업등의 등록대장을 작성·관리(전자적 방법으로 작성·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석재채취업등의 등록요건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1조(석재채취업등의 등록 사항 변경 등의 신고) ① 법 제9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록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석재채취업자등의 명칭 및 대표자
2. 석재채취업자등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 석재채취업자등의 시설·장비 보유 현황
4. 석재채취업에 종사하는 기술인력 현황
5. 석재가공업의 공장등록 현황

② 석재채취업자등은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또는 사업을 양도하거나 합병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시장등에게 신고해야 한다.

제12조(등록취소 등의 세부기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석재채취업등의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의 세부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13조(석재산업의 전시·홍보 지원대상 등)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전통 석재제품 등을 전시하는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 대한 경비의 지원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통 석재제품 등을 전시하는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경비
2. 전통 석재제품 등의 구입 또는 대여에 필요한 경비
3. 전통 석재제품 등의 홍보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경비
4. 그 밖에 석재산업의 활성화 및 홍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비

②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을 갖춘 전통 석재제품 등으로 한다.

1. 해당 전통 석재제품 등의 예술적·문화적·역사적 가치가 높을 것
2. 해당 전통 석재제품 등의 품질이 우수하여 산업화 수요가 높을 것
3. 해당 전통 석재제품 등이 고유한 특성을 가지고 있어 전시·홍보 효과가 높을 것

③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경비의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대상을 선정하려는 경우 필요하면 현지조사를 실시하거나, 전통 석재 제품 등을 전시하고자 하는 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산림청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대상을 선정하기 위해 석재산업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해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통 석재제품 등의 전시·홍보에 필요한 경비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4조(석재산업의 지원대상 등)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추진할 수 있는 지원 시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우수한 석재의 확보를 위한 석재자원 조사
2. 석재의 원활한 수급에 필요한 경영구조 및 유통구조의 개선
3. 석재산업의 해외시장 진출 및 이를 촉진하기 위한 석재산업 관련 기술·인력·정보의 국제교류
4. 석재산업 소득원의 개발 및 육성
5. 그 밖에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시책

② 법 제13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석재의 채취·가공·유통·판매·수출입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임대

2. 석재산업에 따른 환경피해 및 재해의 예방과 복구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임대

3. 석재사업자의 사업장 부지 취득

4. 석재제품 생산을 위한 우수한 석재의 구매

5. 그 밖에 석재산업의 기반조성을 위해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지원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사업(이하 이 조에서 “지원대상사업”이라 한다)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 또는 융자 받거나 기술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자료를 첨부하여 산림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산림청장등”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지원대상사업의 목적 및 필요성

2. 지원대상사업의 기간 및 규모

3. 지원대상사업의 총사업비 및 소요자금

4. 그 밖에 지원대상사업의 타당성을 설명하는 자료

④ 제3항에 따른 지원 신청을 받은 산림청장등은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⑤ 산림청장은 석재산업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석재산업의 지원 업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석재사업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석재산업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5조(전통 석재제품 인증 등의 기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전통 석재제품의 인증 또는 전통 석재제품 명인의 인정(이하 “인증·인정”이라 한다)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16조(전통 석재제품 인증 등의 유효기간 연장) ①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인증·인정의 유효기간 연장을 받으려는 자는 인증·인정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인정의 유효기간 연장신청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산림청장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인증·인정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까지 인증·인정을 받은 자에게 인증·인정의 유효기간 연장신청 절차 및 방법을 문서, 전자메일 또는 문자메시지 등의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③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인증·인정의 유효기간 연장신청 내용이 제15조에 따른 인증·인정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인증·인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해야 한다.

제17조(석재산업진흥지구의 지정 요건) 산림청장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을 석재산업진흥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지역일 것

가. 석재산업진흥지구 지정대상 지역 내 석채취업자등의 수가 10개 이상일 것

나. 석재산업진흥지구 지정대상 지역 내 「산지관리법」에 따른 토석채취 허가지역 및 채석단지 지정지역의 총면적이 60만제곱미터 이상일 것

2. 석재산업 활성화에 필요한 기반시설을 갖추고 있거나 갖추 계획이 있는 지역일 것

3. 석재산업진흥지구 지정대상 지역 내 전문인력양성기관 또는 석재산업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 등을 수행하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또는 연구소·기관이 있을 것

제18조(석재산업진흥지구의 지정 절차 등)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석재산업진흥지구의 지정을 받으려는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은 미리 다음 각 호에 관한 타당성 조사를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임업진흥원에 위탁하여 수행해야 한다.

1. 석재산업진흥지구의 지정 필요성
2. 석재산업진흥지구 지정 대상지역의 적합성
3. 석재산업진흥지구 지정에 따른 경제적 효과
4. 석재산업진흥지구 지정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② 제1항에 따른 타당성 조사의 범위·기준·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③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석재산업진흥지구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시

· 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석재산업진흥지구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제2항에 따른 타당성 조사 결과보고서를 육성계획에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석재산업진흥지구의 위치 및 면적
2. 석재산업진흥지구 관리·육성의 기본방향
3. 석재산업진흥지구 특성 강화에 관한 사항
4. 석재산업의 업종별 상호 연계 강화에 관한 사항
5. 석재산업 관련 시설·장비의 현대화 및 환경피해 저감, 재해 예방 등 석재산업 진흥을 위한 관리·지원에 관한 사항
6. 석재산업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7. 지역주민의 피해방지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해당 지역의 석재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사항

④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⑤ 산림청장은 석재산업진흥지구의 지정에 관한 세부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석재산업 관련 학계·기관 및 단체의 전문가를 포함한 15명 이내의 석재산업진흥지구 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⑥ 산림청장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석재산업진흥지구의 지정 신청

대상지역의 지역여건상 산지의 이용 및 보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산지관리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석재산업진흥지구의 지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⑦ 산림청장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석재산업진흥지구를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산림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지정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1. 석재산업진흥지구의 명칭
2. 석재산업진흥지구의 위치 및 지적도
3. 석재산업진흥지구 육성계획의 개요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석재산업진흥지구의 지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9조(석재산업진흥지구에 대한 관리)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석재산업진흥지구의 지정을 받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육성계획에 대한 해당 연도의 집행실적을 매년 12월 31일까지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집행실적을 제출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점검하고, 그 결과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산림청장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석재산업진흥지구의 지정취소

· 면적조정 · 개선권고 등의 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서면조사 또는 현장조사 등의 방법으로 조사를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석재산업진흥지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다.

④ 산림청장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석재산업진흥지구의 지정취소 · 면적조정 · 개선권고 등 조치를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산림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관할 시 · 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1. 석재산업진흥지구의 명칭
2. 석재산업진흥지구의 위치 및 지적도
3. 조치사항의 내용 및 사유

제20조(석재사업자협회의 정관 기재사항 등)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석재사업자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협회의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5. 회원 자격 득실에 관한 사항
6. 임원의 선출과 임면에 관한 사항
7. 총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8. 재정·회계에 관한 사항
9. 해산 및 잔여재산의 처리에 관한 사항
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21조(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산림청장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임업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2. 제9조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의 공모
3.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우수한 석재의 확보, 시장개척 및 판로확대, 경영 컨설팅 등의 지원
4.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융자 및 기술지원
5. 법 제14조제2항, 같은 조 제5항부터 제6항까지 및 같은 조 제8항에 따른 우수사업자 인증 신청 및 인증에 필요한 비용의 접수, 인증기준을 적합하게 유지하는지에 대한 조사·점검, 인증 기준 및 절차에 필요한 현지 확인
6. 법 제16조제7항에 따른 인증·인정 신청의 접수, 제15조에 따른 인증·인정 기준의 항목별 현지 확인
7. 제16조에 따른 인증·인정 유효기간 연장 신청의 접수
8. 법 제19조제4항에 따른 지리적 표시 등록의 절차에 필요한 현지 확인

9. 법 제22조에 따른 보고·검사 및 자료제공의 요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위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에만 한정한다)
제2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부 칙

이 영은 2021년 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시정명령 및 지정취소에 관한 세부기준(제6조제4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최근 3년 동안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 받은 경우	제6조 제3항제1호	지정취소		
나.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교육훈련을 하지 않은 경우	제6조 제1항제1호 및 제3항제2호	시정명령	지정취소	
다. 교육과정을 교육훈련계획과 다르게 운영한 경우	제6조 제1항제2호 및 제3항제3호	시정명령	시정명령	지정취소
라.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제6조 제1항제3호 및 제3항제4호	시정명령	지정취소	
마.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사람을 이수한 것으로 처리한 경우	제6조 제3항제5호	지정취소		

바. 시정명령에 대한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정해진 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제6조 제3항제6호	지정취소		
--	---------------	------	--	--

석재채취업등의 등록요건(제10조제1항 관련)

종류	자본금(개인의 경우에는 자산 평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시설·장비		기술인력
	법인	개인	시설·장비	규격	
1. 건축용 석재채취업	3억원	6억원	가. 로더(loader: 올리개) 1대 이상일 것	버킷(bucket: 석재 등을 퍼 올리는 통)용량 0.7 세제곱미터 이상일 것	종류별 등록에 필요한 장비에 대한 각각의 운전 또는 조종에 관한 면허나 자격을 가진 사람 1명 이상일 것
			나. 굴착기 1대 이상일 것	28톤 이상일 것	
			다. 운반장비 1대 이상일 것	15톤 이상일 것	
			라. 와이어소(Wire-saw: 줄톱) 1대 이상일 것	분당 0.8 세제곱미터 이상일 것	
2. 공예용 석재채취업	3억원	6억원	가. 로더1대 이상일 것	버킷(bucket: 석재 등을 퍼 올리는 통)용량 0.7 세제곱미터 이상일 것	
			나. 굴착기 1대 이상일 것	28톤 이상일 것	
			다. 운반장비 1대 이상일 것	15톤 이상일 것	

			상일 것	것	
			라. 와이어소 1대 이상 일 것	분당 0.8 세제 곱미터 이상일 것	
3. 조경용 석 재 채 취 업	2억원	4억원	가. 로더 1대 이상일 것	버킷(bucket: 석재 등을 퍼 올리는 통)용 량 0.7 세제곱 미터 이상일 것	
			나. 굴착기 1대 이상 일 것	28톤 이상일 것	
			다. 운반장비 1대 이 상일 것	15톤 이상일 것	
4. 토목용 석 재 채 취 업	2억원	4억원	가. 로더 1대 이상일 것	버킷(bucket: 석재 등을 퍼 올리는 통)용 량 0.7 세제곱 미터 이상일 것	
			나. 굴착기 1대 이상 일 것	28톤 이상일 것	
			다. 운반장비 1대 이 상일 것	15톤 이상일 것	
5. 건축용 석 재 가 공 업	-		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 한 법률」에 따라 석제품 제조업으	-	상시근로자 1 명 이상일 것

		로 등록한 공장일 것	
		나. 절삭기 1대 이상 일 것	-
6. 공예용 석재가공업		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석제품 제조업으로 등록한 공장일 것	-
7. 조경용 석재가공업		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석제품 제조업으로 등록한 공장일 것	-
		나. 조경석 가공 시설·장비 1대 이상일 것	-

비고

1. 자본금

- 가. 주식회사 외의 법인인 경우 자본금은 출자금으로 한다.
- 나. 법인의 자본금은 납입자본금으로서, 납입자본금과 최근 1년 이내에 작성된 재무상태표상의 자본총계가 모두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 다. 개인의 자산평가액은 석채채취업등에 제공되는 자산의 평가액을 말한다.

2. 시설·장비

- 가. 위 표의 장비 중 「건설기계관리법」 등 관계법령의 적용을 받는 장비는 해당 법령에 따라 등기 또는 등록된 것이어야 한다.
- 나. 장비는 그와 같은 등급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시설 및 장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규격을 합산하여 인정할 수 있다.
- 다. 장비는 자기 소유이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장비를 사용하는 경우로서 계약서 등 증빙서류(사용기간 명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업을 등록한 자

2)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사업을 등록한 자

라. 시설·장비의 규격 중 로더 및 굴착기의 버킷용량은 산적용량(散積容量)을 기준으로 한다.

3. 기술인력

가. 기술인력은 상시 근무하는 사람을 말하며 「건설기계관리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자격이 정지된 사람은 제외한다.

나. 1명이 2개 이상의 시설 및 장비의 조종에 관한 면허 또는 자격을 가진 때에는 1개의 시설 또는 장비의 자격을 가진 것으로 본다.

4. 등록기준에 대한 특례

가. 이미 석재채취업등의 등록을 한 자가 다른 종류의 석재채취업등의 등록을 하려는 경우 또는 2종류 이상의 석재채취업등의 등록을 동시에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등록기준을 적용한다.

1) 서로 중복되는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의 경우: 1종류의 석재채취업등의 등록에 필요한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을 갖춘 경우에도 2종류 이상의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의 등록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 본다.

2) 자본금의 경우: 자본금이 많은 석재채취업등의 등록에 필요한 금액을 갖춘 경우에도 2종류 이상의 자본금의 등록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 본다.

나. 다른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등록 또는 면허기준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가 석재채취업등의 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서 정한 등록 또는 면허기준에 따라 갖추고 있는 자본금,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을 석재채취업등의 등록 시 갖추어야 할 자본금,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으로 인정한다.

다. 무동력도구(엔진기관·공기압축기 등 기계적 동력을 사용하지 않는 도구를 말한다)만을 이용하여 건축용 또는 공예용 석재를 채취하는 경우에는 위 표 제1호 및 제2호의 등록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라. 무동력도구(엔진기관·공기압축기 등 기계적 동력을 사용하지 않는 도구를 말한다)만을 이용하여 공예용 석재를 가공하는 경우에는 위 표 제6

호의 등록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마.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7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표 제 1호부터 제4호까지의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 등록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채취한 석재를 직접 가공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한다.

바.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7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표 제 1호부터 제4호까지의 등록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석재채취업등의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의 세부기준(제12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최근 5년 동안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르고,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같은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 동안 영업을 정지하되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9조제1항 본문 또는 제2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법 제11조 제1항제1호	등록취소		
나. 법 제1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법 제11조 제1항제2호	등록취소		
다.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1조 제1항제3호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등록취소
라. 법 제9조제5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11조 제1항제4호	영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마. 석재채취업의 등록요건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	법 제11조 제1항제5호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바. 석재가공업의 등록요건에	법 제11조	영업정지	영업정지	등록취소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	제1항제5호	1개월	3개월	
사.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11조 제1항제6호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등록취소
아. 영업정지기간에 영업을 한 경우	법 제11조 제1항제7호	등록취소		

전통 석재제품 인증 또는 전통 석재제품 명인의 인정기준(제15조 관련)

1. 전통 석재제품 인증기준

다음 가부터 마까지의 항목별로 평가한 결과 총점 75점 이상인 제품을 전통 석재제품으로 인증한다. 다만, 3)에 해당하는 항목이 1개 이하이어야 한다.

구분	내용	점수
가. 전통성	1) 전통 석공예 기법을 원형대로 실현하여 적용한 제품	25
	2) 전통 석공예 기법을 원형에 가깝게 실현하여 적용한 제품	20
	3) 전통 석공예 기법 원형을 다소 변형하여 적용한 제품	15
나. 재료	1) 주재료로 사용한 석재가 100퍼센트 국내산이고, 부재료도 100퍼센트 국내산인 경우	15
	2) 주재료로 사용한 석재가 100퍼센트 국내산이고, 부재료의 일부는 국내산이 아닐 경우	10
	3) 주재료로 사용한 석재가 100% 국내산이 아닐 경우	-30
다. 생산관리	1) 별도 제조작업표준(작업설비·작업방법·작업조건·작업상의 유의사항 등)이 수립되어 있고, 수립된 제조작업표준에 의해 생산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	15
	2) 별도 제조작업표준(작업설비·작업방법·작업조건·작업상의 유의사항 등)이 수립되어 있으나 제조작업표준과 상이하게 작업하거나 다소 미흡한 경우	10
	3) 제조작업표준이 정해져 있지 않고 경험에 의존해 작업하는 경우	5
라. 전통 석재제품 명인의 생산참여	1) 전통 석재제품 명인이 해당제품을 직접 개발하고 생산과정에도 참여하는 경우	25
	2) 전통 석재제품 명인이 해당제품 생산과정에만 참여하는 경우	15
	3) 1) 또는 2)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0
마. 상품성	1) 해당 제품의 전통·예술적 가치가 높고, 기능성과 실용성을 겸비하여 생산, 판매 및 수출 등을 통해 석재산업 진흥에 기여하는 정도가 큰 경우	20

2) 해당 제품의 전통·예술적 가치가 높고, 기능성과 실용성을 검비하여 생산, 판매 및 수출 등을 통해 석재산업 진흥에 기여 하는 정도가 보통인 경우	15
3) 1) 또는 2)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10

2. 전통 석재제품 명인 인정기준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중 전통 석공예 기법을 보전하
고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사람을 전통석재제품 명인으로 인정할 수 있다.

- 1)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석공예분야의 국가무형문
화재의 보유자로 인정을 받은 사람(명예보유자는 제외한다)
- 2) 「숙련기술장려법」에 따라 석공예 직종의 대한민국명장으로 선정된 사람
- 3)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식석공 중 가공석공 종류의 문화재
수리기능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 4) 「숙련기술장려법」에 따른 전국기능경기대회 또는 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
서 석공예 직종으로 입상한 사람
- 5)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석공예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석공예 분야
에서 10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 6) 석공예 분야에 계속하여 20년 이상 종사한 사람

나. 가목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중 다음 1)부터 5)까지의 항목별로 평가한
결과 총점 75점 이상인 자를 전통 석재제품 명인으로 인정한다. 다만, 다)에 해
당하는 항목이 1개 이하이어야 한다.

구분	내용	점수
1) 전통성	가) 전통 석공예 기법을 원형대로 실현 가능한 경우	25
	나) 전통 석공예 기법을 원형에 가깝게 실현 가능한 경우	20
	다) 전통 석공예 기법을 원형에 다소 미흡하게 실현 가능한 경우	15
2) 경력 및 활동사항	가) 해당 분야에서 종사한 경력 및 활동실적이 20년 이상이고 그 업에 종사하는 자	20
	나) 해당 분야에서 종사한 경력 및 활동실적이 15년 이상 20년 미만이고 그 업에 종사하는 자	15

	다) 해당 분야에서 종사한 경력 및 활동실적이 10년 이상 15년 미만이고 그 업에 종사하는 자	10
3) 계승·발전의 필요성과 보호가치	가) 해당 전통 석공예 기법을 체득하기가 매우 어려워 보호하지 않을 경우 그 비법이 소멸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우	25
	나) 해당 전통 석공예 기법을 체득하기가 어려워 보호하지 않을 경우 그 비법이 소멸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15
	다) 해당 전통 석공예 기법을 체득하기가 상대적으로 쉽고, 보유자가 많거나 일반화되어 있는 경우	5
4) 산업성	가) 해당 전통 석공예 기법이 생산, 판매 및 수출 등을 통해 산업성을 갖추고 석재산업 진흥에 기여하는 정도가 큰 경우	25
	나) 해당 전통 석공예 기법이 생산, 판매 및 수출 등을 통해 산업성을 갖추고 석재산업 진흥에 기여하는 정도가 보통인 경우	20
	다) 가) 또는 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15
5) 윤리성	가) 석재산업 분야의 직업 윤리에 대한 기본 소양이 있고 사회적으로 모범적인 모습을 갖춘 자로서,	
	(1) 지역주민, 동종 업계 종사자 및 고객 등에게 전통 석재제품 제조와 관련된 추천을 받는 등 평판이 우수하고 전통 석재제품 명인으로서의 사명감이 큰 경우	5
	(2) 지역주민, 동종 업계 종사자 및 고객의 평판이 보통인 경우	2
	(3) (1) 또는 (2)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나) 「석재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0
	(1)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30
	(2)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경우	
	(3)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3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처분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처분 후의 위반행위만 해당한다)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과태료 부과를 하는 경우 가중된 과태료 부과액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가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하나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의 처분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라.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1) 위반행위가 위반행위자의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2) 위반행위로 인한 결과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한 위반행위자의 노력이 인정되는 경우
-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마.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가장 무거운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려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각 부과금액을 합한 금액을 넘을 수 없으며 법 제2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 1)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해당 위반행위보다 중대한 위반행위를 은폐하거나 조작하기 위해 위반행위가 발생한 경우
- 2) 위반행위가 위반행위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법 제28조 제2항제1호	150	300	500
나.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 명령을 위반하고 영업을 한 자	법 제28조 제1항제1호	500	700	1,000
다. 법 제14조제6항에 따른 조사·점검 등을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법 제28조 제2항제2호	150	300	500
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6조제1항에 따른 인증·인정을 받은 자	법 제28조 제1항제2호	500	700	1,000
마. 법 제16조제2항을 위반하여 인증·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생산한 석재제품에 인증·인정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	법 제28조 제1항제3호	500	700	1,000
바. 법 제16조제3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 또는 명칭을 사용하도록 한 자	법 제28조 제1항제4호	500	700	1,000
사.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보고나 자료제출 또는 검사를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법 제18조 제2항제3호	150	300	500

< 의안 소관 부서명 >

산림청 산지정책과	
연 락 처	(042) 481 - 4294